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2서식] <개정 2024. 10. 4.>

응급구조사 보수교육 [ ]면제 [ ]유예 확인서

성명		생년월일	
자격증번호	제 호	면제(유예) 사유	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[ ] 면제 [ ]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(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) 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120g/㎡)